

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8. 2. 4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가. 소규모 통반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획정기준 조정
- 나. 현실에 맞지 않는 반장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, 통장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 제한.
- 다. 통장이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업무태만으로 통장 업무수행에 소홀히 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2. 주요골자

- 가. 통·반의 획정기준 조정(안 제3조)
 - 반은 20세대 내지 100세대로 구성하는 것을 “20세대 이상” 으로, 통은 3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“5개반 이상” 으로 조정
- 나. 반장의 선출방법 변경(안 제5조제2항제2호)
 -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주민 및 통장추천에 의해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
- 다. 통장 임기 제한(안 제5조제2항제3호)
 -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가능, 단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라. 통·반장 해촉사유 추가(안 제5조제4항제5호)
 - 통장이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임무소홀, 업무태만일 경우 통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 추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
 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 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 - 라. 입법예고 : 2007. 11. 23 ~ 12. 13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”
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” 로 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개내지 10개반” 을
“5개반 이상” 으로 한다.

1.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자연부락,
취락형태,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
산 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한다.)이 현지실정에 맞도
록 조정 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 중 “시장” 을 “부산광역시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” 를 “주민 또는” 으로 하고,
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1” 을
“어느 하나” 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- 3.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5. 기타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통·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

제6조제2항 중 “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” 를 “주민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임무” 를 “임무, 주민 복지업무지원” 으로 한다.

- 3.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 파악

제10조의 제목 “(운영실적의 평가)” 를 “(통·반장 표창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·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” 을 “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” 로 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연임회수의 적용례)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임기를 1회로 하여 기산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-----</p>			
<p>제3조(확정기준) 통·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반은 20세대 내지 100세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2. 통은 3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되,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확정기준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자연부락, 취락형태,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2. ----- 5개반 이상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		
<p>제4조(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부산광역시장 -----</p> <p>-----</p>			
<p>제5조(통·반장의 위·해촉) ① (생략)</p> <p>②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반장은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<u>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</u>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통장이 위촉한다.</p> <p>3.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통반장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주민 또는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		

현행	개정안
<p style="color: red;">〈 신 설 〉</p> <p>③ (생략) ④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</p>	<p style="color: red;">4.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어느 하나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color: red;">〈 신 설 〉</p>	<p style="color: red;">5. 기타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</p>
<p>제6조(명예반장) ① (생략) ② 명예반장은 <u>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</u>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6조(명예반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명예반장은 <u>주민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임무)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과 통·반적부관리</u> 4. ~ 8. (생략) 9.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<u>임무</u>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7조(임무) ----- ----- 1.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 파악</u> 4.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<u>임무, 주민복지업무지원</u> -----</p>
<p>제10조(운영실적의 평가)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통·반장 표창) ① <삭제> ② <u>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(편의제공)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<u>각종 잡부금을 면제</u> 받으며 <u>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</u> 제공 받을 수 있다.</p>	<p>제13조(편의제공) ----- ----- <u>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</u> -----</p>